

주간건설 *Review*

543호 2018.7.20(금)



(사)한국건설경영협회

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

홈페이지 : <http://www.kfcc.or.kr>, 연 락 처 : 02-771-7936

주 소 : (121-916)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-2103

■ **업계 동향**

- ▶ 현대건설, 해외봉사단 'H-컨택' 2기 출범
- ▶ 삼성물산, 아파트 하자발생 최소화 품질실명제 도입
- ▶ 대우건설, 노후주택 고치기 봉사활동
- ▶ 한화건설, 건축 꿈나무 여행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

■ **건설경제 일반동향**

- ▶ 근로시간 단축 도입 이후 건설업계 동향

■ **건설 제도정책 동향**

- ▶ 유료도로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- ▶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
- ▶ 국민연금 의무가입 확대 법안 8월1일부터 시행
- ▶ 하도급법 개정안, 의원 입법발의
- ▶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, 입법예고
- ▶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, 입법예고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8.7.14.(토)~2018.7.20(금)>

제543호 2018.7.20(금)

<업계 동향>

◆ 현대건설, 해외봉사단 'H-컨텍' 2기 출범

○ 7월19일 현대건설은 국제개발협력단체 '코피온'과 함께 해외봉사단인 'H-CONTECH (에이치컨텍) 2기' 발대식을 개최하였음



○ H-컨텍은 현대건설의 이니셜인 'H'와 건설 (Construction)과 기술(Technology)의 영

현대건설 서산농장 연수원에서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받은 2018년 H-CONTECH 2기 봉사단

어 앞글자를 딴 봉사단 이름으로 업계 최초 기술교류형 해외봉사단으로, 2기 봉사단은 1기와 마찬가지로 10명의 현대건설 임직원과 35명의 대학생 봉사자 등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음

○ 봉사단은 오는 8월2일 출국해 12박 13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와 하이퐁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현지 교과 수준에 맞춘 과학,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봉사와 환경개선봉사 등 기술교류형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임

○ 특히 현대건설의 해외봉사활동은 다른 해외봉사단과는 달리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직원들과 현지 교수 등과 함께 '건설기술세미나'를 현지 대학(교통운송대학교.건설전문대)에서 진행해 현대건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연구 사례를 공유하며, 현지 생활 및 관습, 경제 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물·위생·전기 에너지 부족 등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'적정 기술' 아이디어도 낼 예정

◆ 삼성물산, 아파트 하자발생 최소화 품질실명제 도입

○ 7월18일 삼성물산은 이달부터 자사 아파트 브랜드 '래미안'의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실명제와 품질시연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힘

○ 삼성물산은 품질실명제를 통해 결로와 소음, 누수, 탈락 등의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공자와 관리자가 시공상태를 확인한 뒤 서명하도록 함으로써, 시공담당자는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수 있으며 입주고객은 품질관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

수 있다고 설명하고, 품질시연회는 방수, 단열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발생 가능한 하자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장소장을 포함해 시공과 품질을 담당하는 전 인력이 참석해 계획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해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제 시공에 반영하도록 하였음



서울 가락시영재건축 현장에서 도배 품질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 관계자들

- 삼성물산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주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

◆ 대우건설, 노후주택 고치기 봉사활동

- 7월13일 대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‘희망의 집 고치기’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음



희망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들

-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37명이 참여해 도배, 장판 및 싱크대 교체, 단열작업 등의 활동을 펼친 이날 봉사활동은 한국해비타트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1000원 미만의 동전을 모아 마련하였음

- 대우건설은 건설업 특성을 살려 노후 사회복지시설 리모델링, 담장 개보수, 배수로 보완공사, 소외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등 인프라 개선공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, 대학생 홍보대사 15기 활동에도 기업특성을 접목해 전통시장, 소방관 휴게시설, 유기견 보호소 환경개선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할 계획임

- 대우건설은 인프라 개선공사 외에도 본부별 릴레이 봉사활동, 추석 운용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음

◆ 한화건설, 건축 꿈나무 여행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

- 한화건설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7월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강원 한화리조트 평창에서 '건축 꿈나무 여행 대학생 봉사단'의 발대식을 진행하였음



- 이 행사는 건축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 한화건설이 2013년부터 운영 중

건축 꿈나무 여행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한 한화건설

- 인 재능 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한화건설 직원 1명과 건축학부 대학생 2명이 팀을 이뤄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음
- 봉사단에 참여하는 대학생 20여명은 이번 행사를 통해 워크숍·나눔교육·멘토링 외에도, 건축 관련 직업 및 직무 소개, 설계실습 등을 수행했으며, 앞으로 7, 8월 2개월간 서울 시내 20여 개 중학교를 방문해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멘토링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, 우수 대학생 봉사팀에는 총 1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
- 한화건설은 건축 꿈나무 봉사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진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8.7.14.(토)~2018.7.20(금)>

제543호 2018.7.20(금)

<건설경제 일반동향>

◆ 근로시간 단축 도입 이후 건설업계 동향

- 주 52시간 근무 여파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, 전철, 경전철 등 제도 시행이전부터 진행되었던 민자사업 부문과 주택건설 현장의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가 특별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음

<주요내용>

□ 민자사업 부문 동향

- 국토교통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 A노선과 신안산선 등 신설 철도망 개통 지연과 이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 이들 2개 사업의 공사비 및 공정계획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무관하다는 입장
- 국토부는 해당 공사의 경우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뺀 주 6일 근무에, 표준품셈에 따른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적용해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산정했다고 설명
- 반면 두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측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전에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다보니 과거 기준으로 공사비와 공기를 산정했다며 정책변경으로 건설환경이 달라진만큼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
- GTX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는 총사업비 3조3600억원의 5% 이상 사업비를 늘려 공기를 맞추거나 공기를 9개월 정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,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역시 기존 사업비의 5% 정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
- 특히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‘표준품셈에 따른 1일 8시간’ 주장에 대해 표준품셈은 단위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,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아니라고 반박
- 특히 7월초 기획재정부가 ‘계약업무 처리지침’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청구를 허용했지만, 공기 연장 산정기준과 방법이 모호하고, 돌관작업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기준도 불명확해 향후 다툼의 불씨가 확산될 전망
-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 정책변화로 선의의 피해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

□ 주택사업 분야 동향

- 전국의 신규아파트 사업장도 단축된 근무시간으로 인해 아파트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입주일을 맞추지 못하는 '입주지연'으로 이어져 지체보상금은 물론, 자칫 관련 손해배상소송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 증가
-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신규아파트 등 민간공사도 적정 공사비 및 공기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,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고시한 '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' 개정 외에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
- 국토부는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으려면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더 투입하면 되고 사인간 계약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,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전에 착공한 현장만이라도 정부가 입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는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
- 그러나 신규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과 입주지연은 결국 업체들보다는 입주민들인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이를 감안한 사전적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

<주52시간근무제 도입에 따른 분양아파트 사업장 영향 예시>

시공업체 신용등급	AA(보증심사 2등급)
총 가구수	1004가구
주택형 가구수	공급면적 112㎡(전용 85㎡) : 424가구
	공급면적 145㎡(전용 112㎡) : 580가구
분양가격	112㎡ : 6억1000만원 / 145㎡ : 7억9000만원
총 건축비	1715억원 *건축연면적 기준 3.3㎡당 520만원
공사기간	30개월
추가 공사기간	4개월(120일) *1주당 공사 가능일수 6일로 계산
추가 건축비	229억원
지체보상금	95억5645만원(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, 계약금·중도금 80%, 연체료 5%)
추가 분양보증 수수료*	3146만원(보증료율 0.172% 적용)

자료 : 머니투데이 7/20일자 보도, *추가 분양보증 수수료는 건축비 부분

- 신규아파트 공사기간은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통상 30개월(2년6개월) 정도 소요되지만, 현장작업자들의 근로시간이 종전(최대 68시간)의 4분의 3수준인 52시간으로 줄어든 만큼 4개월 안팎의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

-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'일요일 휴무제'를 감안하면 1주당 실제 근로일수는 6일로, 1년이면 52일 정도 현장작업을 중단해야 해 신규아파트 사업장당 전체 공사기간 중 최소 120일에서 130일 가량 공사를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
-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자와 건설사간 지체보상금 분쟁과 손해배상소송 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
- 건설사들이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으려면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추가로 현장 인력을 늘려야 하는데,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6월 11일 발표한 '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'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대 14.5%의 공사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건설사들이 일방적으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

주간 건설 REVIEW

<기간 : 2018.7.14.(토)~2018.7.20(금)>

제543호 2018.7.20(금)

<건설산업 제도·정책 동향>

◆ 유료도로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○ 국토교통부는 7월10일 ‘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입법예고

<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>

□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의 구체화

- ① 「민간투자법」에 따른 기본계획에 규정된 자기자본비율(건설기간 중 총 민간투자비의 15%, 운영기간 중 관리운영권 잔액의 10%)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, ② 「이자제한법」, 「대부업법」중 낮은 이자율 또는 주무관청과 합의하지 않고 이자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주주로부터 차입한 경우, ③ 다른 도로의 연결, 유료도로 기능의 지장, 대규모 개발사업, 정책의 변경 등으로 교통량이 30% 이상 변화된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(주무관청)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

□ 과징금의 신설

- 유지·관리·운영 기준을 위반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,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통행료 수입의 0.01%~3%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□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 추가

- 도로의 위험을 유발하지 않은 경미한 유지·관리·운영 기준 위반 시, 자료제출 거부 시 등에 3년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100만원~1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<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>

□ 민자 기간이 종료된 도로의 통행료 결정 기준 및 절차

- 통행료 산정 시 인건비, 수선유지비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,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, 통행료의 결정은 도로정책 심의위원회 또는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

◆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

- 정부는 7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‘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’을 발표
-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정책방향으로, △일자리·소득분배 개선 △혁신성장 가속화 △시장

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 △거시경제 활력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함

- 그러나, 기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나, 내수 활성화 대책 등은 사실상 배제되고, SOC 확충 등 건설투자 연착륙 방안은 도외시함에 따라, 전문가들은 거시적 관점의 경제성장을 제고를 위한 신성장동력이나 지속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

<‘하반기 경제정책방향’ 주요내용>

□ 일자리·소득분배 개선

- 확장적 재정기출을 기반으로 근로장려세제(EITC)와 기초연금, 실업수당 등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, 민간 부문 일자리의 ‘마중물’ 역할을 할 공공·사회 서비스 등 공공 일자리 확대
- 청년·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적주택 공급 확대,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*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추진(하반기), 100곳 내외의 신규 사업 선정(8월)
- 수도권 GTX 건설 가속화, 버스 준공영제 확대 검토, 노후 주거 교통시설 교체 보수, 안전·환경개선 설비 보강

□ 혁신성장 가속화

- 시장·일자리 창출효과 큰 핵심규제 선정·발표(8월 중) 및 입지·공유경제 등 분야의 규제개선(하반기 중)
- 기업 등의 구체적인 투자수요 발굴·지원, 창업 활성화

□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 강화

- 다중대표소송제 도입,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입법 가속화
- 하도급·유통·가맹·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

□ 거시경제 활력 제고

- 기금 변경, 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

구분	투자규모
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, 민간임대 용자 확대	2조4000억원
고용유지지원금과 신시장진출 자금용자 등	5000억원
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및 스포츠산업 용자 확대 등	3000억원
LH(한국토지주택공사)와 K-water(수자원공사)를 통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정비 및 시화호(송산) 기반시설공사 등	4000억원
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, 주요 발전공기업과 환경공단 등의 안전설비 및 미세먼지 저감 시설 확충	2000억원

◆ 국민연금 의무가입 확대 법안 8월1일부터 시행

- 보건복지부는 7월24일 차관회의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’을 상정 · 7월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
- 개정안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 요건을 확대(월 20일 이상 근무 → 월 8일 이상 근무)하고, 기존 건설현장은 적용을 2년간 유예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
- 이에 따라, 입찰공고 이후 낙찰자 결정과 건설근로자 고용 등 건설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은 제도 시행 이후 2~3개월 뒤가 될 것으로 예상됨

◆ 하도급법 개정안, 의원 입법발의

- 7월1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압류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’을 대표발의함
-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,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제3자가 압류하는 경우,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
-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

<개정안 주요내용>

□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압류 금지

-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,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·면제 등 처분할 수 없음

◆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, 입법예고

- 통일부는 7월16일 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을 입법예고
- 개정안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같은 경제협력사업 중단 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

<개정안 주요내용>

□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

- 통일부장관은 일정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·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, 다만,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하여 국무회의의 심의·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함

□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시, 국회 보고

- 남북교류·협력을 제한 또는 금지한 경우, 통일부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함

□ 협력사업 중단시, 통일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허용

- 남북교류·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중단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

□ 남북교류·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시, 청문 실시

-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·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

◆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, 입법예고

-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로 고발된 원사업자에 대한 공공시장 즉시 퇴출(일명 ‘원스트라이크 아웃제’)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개정안을 입법예고
- 이에 대해, 대다수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기업 간 오랜 계약관행이나 업체 간 특수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, 공정위 조사·결정만으로 기업의 존폐와 직결될 수 있는 ‘영업정지’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한 규제라는 입장
- 또한, 하도급대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한 신고사건이 폭주할 수 있고,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 압력, 협박을 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는 등 과도한 제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

<개정안 주요내용>

□ 법위반행위 역지력 제고를 위한 벌점제도 보완

- 한 차례의 위반행위만으로도 입찰참가 제한(벌점 5점 초과)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대금 부당결정·감액,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.0점에서 5.1점으로 상향 조정
- 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아도 입찰참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대금 부당결정·감액, 기술유용,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2.5점에서 2.6점으로 높임

□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

-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‘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’를 삭제

□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- 과거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원사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, 그 임직원 등에게는 최대 5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과기준 신설

□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

-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, '기본금액'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

□ 기술자료 관련서류의 보존기한 연장

- 기술자료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한을 현행 '거래종료 후 3년'에서 '7년'으로 연장

□ 기술자료 요구 시 그 사용기간, 반환·폐기방법 등 서면 기재 의무화

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에 '기술자료의 사용기간', '반환 또는 폐기방법', '반환일 또는 폐기일'을 추가